

社會와 企業

尹 洪 九*

I. 序 論
II. 歷史的 發展

III. 오늘의 問題點
IV. 給 論

I. 序 論

初期의 General Motors의 社長이 어느 公席上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General Motors를 위하여 좋은 일이면 이는 역시 美國을 위하여서도 좋은 일이다.” 이와같은 이야기는 企業의 利益과 國家의 利益이一致되어 何等의 利害關係의 마찰이 없던 自明한 事實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지금와서 企業家들은 위와같은 이야기를 뒤집어서: “美國을 위하여 좋은 일은 역시 企業을 위하여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한다. 이로서 우리는 企業의 利益과 社會의 目的이 서로 相異할 수 있음을 역설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실로써 企業과 社會의 權力構造가 變遷되고 있음을明白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變遷을 좀더 깊게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社會에서 企業의 活動의 意義를 說明하고자 하는 것이 本 論文의 目的이다.

우선 企業과 社會의 相互關係를 歷史的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企業에 對한 現時點에서의 問題들을 重點的으로 다루어 봄으로써 企業과 社會의 相互關係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II. 歷史的 發展

(1) 18世紀 유럽에서는 國家的으로 產業施設을 發達시킴으로써 國民의 福祉를 向上시켜 所謂 一等國民이 될 수 있다는 진취적인 領主들의 노력과 學問的 欲求가 대단하였던 時代라고 볼 수 있다. 重商主義의 經濟理論은 土地의 收穫遞減의 法則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Malthus는 人口의 行장을 예언하였다. 收穫遞減의 法則과 Malthus의 人口論의 結合은 人類의 食糧難이 不可避

* 本研究所 研究員, 檀國大 商經大 助教授(經博)

產業研究

하다는 結論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自然科學의 發展은 이와같은 危機는 不可避한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社會組織이나 國家的 經濟活動은 科學的인 知識을 實際로 應用하기에는 無能하였던 것 같다.

“이 危機를 모면하려면 아마도 社會가 다르게 組織되어야 했다.”¹⁾ 이와같은 社會의 “組織改編”은 產業革命以後 19世紀까지 유럽과 北美에서 있었던 社會의 雷동기이기도 하다. 社會의 體質改善과 金融機關의 發達과 自由企業의 發生은 社會의 새로운 組織의 核心的 要素들이다. 前近代的 經濟秩序는 個人的 自由와 生產手段의 私有化를 強調하는 經濟秩序로 바뀌었다.

이 새로운 經濟秩序에서는 經濟的 共同體概念은 희박하여졌다. 따라서 近代的 封建主義社會에서의 原則인 “共同의 利益이 個人的 利益을 優先한다”는 생각은 產業革命以後부터는 차차 그 實現性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그 反面에 經濟學의 아버지인 Adam Smith의 指論이 登場하였는 바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自由競爭이란 손에 의하여 需要者와 供給者が 價格에 카니즘을 通하여 統制받지 않은 市場에서 서로 調和될 때 個人的 利益으로부터 社會共同體의 利益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企業이 成長하는 人口를 物質的 貧困으로부터 解放시킬 의무를 지게 되었다. 과연 私企業이 이와같은 課題로 充分히 解決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도 工業國家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浪費의 洪水”란 表現으로 超過達成하였다고 비난을 받는 형편이다.

19世紀 유럽의 工業化段階에 있어서의 企業과 社會와의 關係를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다. 社會는 私企業이 社會成員의 衣食住問題를 解決하겠끔 하였으며 私企業의 意思決定에 國家의 統制를 배제하는 經濟秩序를 마련하여 주었다. 不良品生產으로부터 社會成員의 利益을 보호함에 있어서도 社會는 全體的인 物質生產에 重點을 두었고 法律的인 面에서도 私企業에 有利하게 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經濟的인 問題에서는 國家는 副次的인 役割밖에 하지 않았다.

(2) 19世紀의 私企業의 發達은 그러나 企業과 社會의 相互關係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問題를 유발시켰다. 即 權限과 任務, 自由競爭, 그리고 社會問題이다.

企業의 權限과 任務에 대해서는 지금 私企業이 과연 그에게 부여된 課業을 앞으로도 充足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와같은 疑問은 우선 相續의 妥當性의 問題에서부터 出發한다. 다시 말해서 相續者가 生產手段의 새로운 主人으로 企業이 수행하여야 할 課業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는 問題이며 또다른 하나는 나날이 成長하는 企業을 創業主 혼자서 뒷바로 운영할 수 없다는 事實이다. 私企業에 의하여 財貨와 用役을 계속적으로 調達받아야 하는 社會의立場에서는

1) A.A. Gurland. Wirtschaft und Gesellschaft im Übergang Zum Zeitalter der Industrie, in: G. Mann, (Hrsg.) Propylaen Weltgeschichte. 8. Bd. Berlin, 1960, s. 282.

社會와 企業

創業主의 人間的인 能力과 壽命의 限界때문에 企業의 새로운 組織을 通한 解決策을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고려에서 生產手段의 所有와 經營的 支配 即 所有와 經營의 分離 理論이 發生하게 되었다. 또한 經營者의 形態도 發達하여 고용경영자, 전문경영자가 나타나게 된 것 우린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經營者 革命’²⁾도 工業國의 大企業에서는 이미 完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革命은 所有者의 利害關係로부터 企業의 獨自性을 可能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變遷하는 社會的 要求에 企業이 신속히 反應할 수 있는 前提를 이루어 놓았다.

自由競爭이 古典的 經濟學者들의 말대로 實際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社會는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손”, 價格 메카니즘을 通하여 需要와 供給이 제때에 마찰없이 調節되지 않는다. 資本家, 消費者 그리고 從業員들에게 피해를 주는 破壞的인 競爭의 形態는 市場을 獨占하기 위하여 競爭企業을 合併한다던가 競爭企業과 칼벌을 形成하려는 努力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市場秩序가 비교적 오래동안 獨逸에서 용납되었던 반면에 美國에서 이미 19世紀末에 社會的으로 해로움을 알아채었다. 따라서 自由競爭에 대하여는 國家가 從來의 副次的인 立場에서 탈피하여 積極的인 관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國家는 自由競爭이 各個別企業이 그들의 能力이 자라는대로 活動함으로서 社會全體의 富를 증진시킬 수 있는 前提가 되겠음 감시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浪費의 洪水가 날 정도로 적어도 工業國에서는 消費生活이 윤택해 졌으며 그렇다고 하면 企業이 社會가 必要로 하는 物資를 供給한다는 任務는 完遂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年代의 經濟成長에 힘입어 前에 比하여 팔목할 정도로 消費生活이 윤택해 졌음을 부인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그 뒤에 힘겨운 作業條件을 감수하여야 했다.³⁾ 여기에서 社會의in 문제가 제기된다. 이같은 問題解決을 위하여 두 가지 方向에서의 努力を 하고 있다. 그 하나는 作業時間의 短縮이라던가 婦女子의 作業禁止같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大企業에서 나날이 匿名化하고 官僚化하는 意思決定過程에 從業員들의 參加할 수 있는 可能性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社會問題에 대한 해답은 企業과 社會의 다음과 같은 相互關係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即 企業이란 國民에게 財貨와 用役을 供給하는 社會의 任務만이 주어진 獨自의in 經濟單位가 아니라 한정된 범위내에서 人間이 서로 協力함으로써 人間關係를 가지며 그들의 才能과 創意를 펼쳐 나아가는 社會의 機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두가지의 社會的 課業이 마찰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와같은 企業과 社會의 關係는 오늘날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2) J. Bernham. The Managerial Revolution, New York, 1941.

3) 여기에서 감당하여야 하는 힘겨운 作業條件이란 딴 것이 아니라 직업병, 산업재해등을 말하며 너무도 기계화된 作業場에서 人間性의 상실같은 것을 生產性 向上을 위하여 치루어야 하는 代價를 의미한다

產業研究

a) 누가 生產手段의 投入을 決定하느냐?

b) 제 機能을 發揮하는 自由競爭秩序를 國家와 企業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c) 나날이 變遷하는 消費者의 欲求를 充分히 滿足시키는 것과 한 共同體 内에서 專門的이거나 人間的인 能力を 啓發하려는 從業員들의 欲求를 어떻게 調和시키느냐의 問題이다.

위에 말한 세 개의 問題를 解決한다는 것은 原則的으로 社會政策的인 意思決定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社會的 目的의 수행을 위하여는 社會政策의 方向이 社會 모든 機關에 傳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目的수행은 企業과 社會의 立場에서 解決되기 보다는 企業自體의 意思決定機關의 構造的 變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所有와 經營의 分離와 從業員의 經營參加는 한 企業의 意思決定權限의 漸進的 變化를 의미하는 것이지 企業의 權限의 基本的 解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그런데 企業이 社會의 모든 欲求를 充足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交通서비스, 코뮤니케이션 그리고 教育서비스는 國家와 企業 경우에 따라서는 一部 또는 全部를 國家가 감당한다. 특히 一國의 主權을 지키는 일, 對外 對內的으로 安保를 유지하는 것 또는 貨幣價值를 安定시키는 일들은 國家만이 할 수 있는 課題이기도 하며 國民全體가 언제나 必要로 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一般的으로 어떤 社會的課業을 國家가 담당하고 어떤 課業은 企業이 특히 私企業이 담당하고 어떤 課業은 企業이 특히 私企業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一律的인 原則은 없다. 다만 國家마다 이 課業의 分擔이 다른 것은 그 나라의 주어진 經濟的 여건의 差異와 歷史的인 背景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歷史的 發展過程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企業과 社會의 關係는 한 社會에서 그들의 課業을 수행하고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社會 또는 國家의 體制와 組織으로 理解된다. 이와같이 獨自的인 經濟的 主體에 그들의 課業을 分擔시키므로 社會나 國家의 體制 내지 組織의 問題를 解決하려면 여기에는 特定한 前提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그 하나의前提是 한 行爲의 主體가 그에게 부여될 任務를 해낼 能力과 用意가 있느냐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社會全體의 利益을 增進시키며 自由競爭의 效率的으로 그 本然의 機能을 發揮하느냐는 것이다.

만일 社會的인 目的과 任務가 變化될 때 例를 들어 技術進步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有效한 自由競爭의 條件이 달라졌다면 이 組織의 問題 또한 새롭게 고려하여 解決策을 求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企業과 社會의 關係에서 現時點에서 論爭의 中點이 되고 있는 다섯 가지의 問題만을 分析하여 보기로 한다.

III. 오늘날의 問題點

오늘날 企業과 社會의 關係에서 重要視될 수 있는 것들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a) 消費者와 生產者와의 關係이다. 이 關係를 비판하는 사람은 „unsafe at any Speed”라고 비난한다.

b) 勞使關係, 이 問題는 여러 方面에서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하면 從業員과 企業主가 企業에 부가된 任務를 다할 수 있느냐의 問題로 要約된다. 비판적인 見解를 가지는 사람들은 職場이 非人間化한다고 不滿을 털어놓는다.

c) 企業과 國民과의 關係, 이 關係에서는 자주 “生活의 質”이 問題視된다.

d) 企業과 國家와의 關係이다. 이는 傳統的으로 이데올로기의 色彩가 농후한 關係이다.

e) 끝으로 先進國과 後進國의 關係를 들 수 있다. 이 關係에 대한 비판과 改善策은 궁극에는 “새로운 世界經濟秩序”를 要求하기에 이른다.

(a) “Unsae at any Speed”的 가치를 들고 乘用車의 안전장치의 不充分함에 대하여 1965年 Nader가 挑戰하기 始作하였다.⁴⁾ 이것이 호시가 되여 自由世界의 모든 나라에서는 消費者運動이 일어났고 工業製品의 安全性과 그의 質을 조사하게 되였다.

消費者運動의 뿌리는 사실상 그 근원을 企業과 社會의 關係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企業은 利益을 위하여 社會에 製品을 供給하여야 할 課業을 不充分하게 또는 기만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犯法的으로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⁵⁾ 그렇게 하므로 製品을 使用할 때 부상을 당하거나 生命에 위협을 느끼는 商品을 고객에게 供給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같은 消費者運動을 通한 비난에 대한 企業의 反應은 時間을 두고 보면 아주 多樣하여진다. 처음에는 이와같은 비난을 事實無根이란 式으로 반박하였다. 그러나 재빨리 企業은 이 消費者運動이 몇몇 出世欲이 強한 辯護士나 社會團體에 의하여 일어나는 運動이 아니라 不良製品에 대한 不滿이 國民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알아채게 되었다. 初期에는 消費者運動을 反對하던 매스콤도 차차 同調하기 始作하였다. 그리고 法庭과 立法機關에서도 이 問題를 해결하려고 鉅극적인 立場을 보였다. 그래서 生產者가 져야할 責任의 범위도 넓어지고 美國에서의 Consumer Product Safty Commission 같은 行政的 監視機關도 發足하게 되었다.

企業은 앞으로 그들의 製品이 有害하지 않다는 것 만이 아니라 그 製品이 充足해야 할 機能을 사실상 充足한다는 것을 證明해야 할 負擔을 지게 되였다.

그러나 한便으로는 消費者의 意識水準도 높아져서 製品의 安全性은 그에 相應하는 값을 치루

4) R. Nader, Unsafe at any Speed. 1965.

5) 우리는 아직도 製靴用 原皮가 市場에서 음식으로 使用되기도 하고 飼料로 유산균 음료를 만들어 판惡德企業을 기억한다.

產業研究

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現時點에서 消費者運動이 企業과 社會의 關係를 根本的으로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것은 아무리 企業에 負荷된 짐이 무겁다고 하여도 企業側에서 원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消費者도 私企業에 의한 多樣한 物資의 供給을 選好하는 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結果的으로 消費者運動은 生產者와 消費者의 力學的構造를 調節함으로써 前에 보다 더 많이 消費者의 立場을 생각하게 되었다.

(b) 勞使關係는 產業化가 이루어진 이래 世界 어느 곳이나 언제나 있는 일이며 產業社會에 가장 重要한 社會問題이기도 하다. “勞動者의 天國”이라고 하는 共產圈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한 모양이다. 近年の フィンランド의 自由勞組運動만 보아도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그러나 이 勞使關係의 樣相은 그 나라의 產業化의 程度, 文化的背景 그리고 政治體制에 따라 서로 다르며 이 問題를 解決해 나가는 方法과 問題의 重點는 매우 다르다.

만일 勞使關係를 先進國型과 開發途上國型으로 分類한다면 前者의 경우 賃金問題보다는 賃金 외의 勞使關係가 問題의 초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 賃金이 그다지 큰 問題로 대두되지 않는데는 오랜 期間동안 계속되어온 勞使協商의 傳統에 의하여 때로는 아주 팽팽한 對立을 보이다가도一年에 한번씩 있는 賃金調定은 쉽게 그妥協點을 찾는다. 그럴 수 있는前提是企業이 提示하는 財務諸表에 對한 신빙성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勞動組合側에서의 要求가 實現可能한 것 이란 點에서 理解된다. 또한 여기에 企業家의 社會的責任과 勞動者의 意識水準도 큰 作用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0年代 以後 계속되어온 爭點은 企業에 있어서 勞動條件의 改善이다. 이 條件들은 主로 就業의 安定, 人間的인 勞使關係의 造成等이 企業의 利潤追求에 의하여 무시되거나 등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產業災害 件數가 社會指表가 되기도 하고 스웨덴의 自動車會社 Volvo는 콘베어 시스템을 폐지하고 “勞動의 人間化”란 기치 아래 “人間勞動의 機械化”를 제거해 보려고도 하였다.

이와같은 비난은 部分的으로는 지금까지 私企業이 이룩해 놓은 社會的貢獻을 歪曲하여 古典的인 資本主義 批判을 正當化하려는 左傾要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世界第二次 大戰後의 再建이 完結되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였던 物質的富를 향유하게 되자 工業國에서는 人間의 欲求變遷이 일어났다. 그들의 새로운 欲求는 教育, 餘暇時間이며 지금까지 社會의 뒷전에서 천대받던 集團에 대한 보다 나은 배려이다.

이와같은 社會的 要求에 私企業은 또한 反應을 보였다. 工業國에서 法으로 定한 安全規則, 會社內의 醫師, 安全技士들 外에도 企業은 임의의 또는 다른 企業이 이같은 일을 하니까 강요된 입장에서 勞動者의 便宜를 보다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身體障礙者나 알콜中毒者 또는 前科者같은 社會的 問題兒를 社會集團에 再統合할 수 있겠음 일자리를 제공한 것도 다른 한 頁面에서 본 社會的貢獻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企業內에서 從業員들이 그들

의 能力を 發揮할 수 있는 機會를 前보다 많이 즐길 수 있겠음 한 것도 요즈음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 代表的인 例는 여러 企業이 그들 從業員 이 教育프로그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產業災害에 의한 死亡者數도 날이 갈수록 감소되었다. 西獨의 경우 1950年에서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產災死亡者數는 45%로 감소하였다. 또한 職種과 賃金에 있어서의 男女의 差別도 하나의 社會的 問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差別問題는 그 나라의 文化傳統과 產業水準에 큰 差異가 있으며 그 解決方法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一般的으로 말하여 特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職種과 賃金에 있어서 平等化하는 경향 即 “같은 勞動에 같은 賃金”이란 方向으로 움직임을 볼 수 있다.⁶⁾

勞動의 非人間化 또는 人間勞動의 機械化에 대한 비난에 대해여서도 企業은 明瞭한 目的을 세웠다. 그에 의하면 “모든 從業員은 企業이 實現可能한 범위내에서 그들의 自由裁量을 협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企業이 實現可能한 범위”라는 制限이 경우에 따라서는 從員들의 自由裁量을 完全히 뚝살할 수는 있으나 한 企業이 치열한 國內外의 競爭에서 그들의 品質과 價格面에서 이겨야 한다는 냉혹한 經濟現實을 감안할 때 否定的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그들은 人間勞動의 機械化를 배제하기 위하여 可能하면 콘베어시스템을 作業場 씨스템으로 대체하고 勞動者가 너무나도 단순한 作業으로부터 좀 多樣한 作業을 함으로써同一作業에 의한 肉體的 精神的 紛糾을 덜어보려 하였다. 그리고 集團作業에 의한 人間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努力과 集團別 自體統制를 通한 從業員의 責任과 權限에 限界를 넓힘으로써 職場에 있어서의 生產勞動者들의 소외감을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成果는 勿論 西歐에서 勞動組合과 企業파의 均衡있는 對立과 協調의 所產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곳과는 文化傳統이 다른 東洋의 경우 日本에서 시작한 QC運動이 이와 유사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西歐의 그것보다는 日本의 QC運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본다.

結果的으로 產業社會에서 企業內의 作業條件의 改善에 대한 품임없는 論爭은 “勞動의 人間化”란 表現으로 代表된다. 그리고 이와같은 움직임은 企業과 社會의 關係를 점차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企業이란 지금 와서는 營利만을 추구하는 個人的 所有物이 아니라 社會의 機關임이 밝혀졌으며 그들의 意思決定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보이기始作하였다. 社會團體 特히 勞動組合이 이와같은 關係의 變化에 기여한바가 크다.

(c) 國民과 企業의 關係에 이상이 있음을 다음과 같은 新聞記事로 알 수 있다. 한 一年前 일로 기억한다. 漢江上流의 어느 財閥의 農場에서 흘러나오는 오물이 數百萬 서울市民의 食水源을 오염시킨다는 報導에 분개한 적이 있다. 그외에도 우리는 江下流에서 기형의 물고기가 잡힌다느니 工業廢水에 의한 환경오염은 나날이 듣고 보는 것이다.

이와같은 產業公害에 대한 비난은 한편으로는 物理的 性格을 띠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社會道

6) 朴世逸：女性勞動市場의 問題點과 男女別 賃金隔差分析，韓國開發研究 82年 여름호 p.59~87.

產業研究

義的인 面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된다. 60年代末 내지 70年代 初만 하여도 公害問題는 어떻
게 생각하면 工業國들의 배부른 푸념인냥 들어왔으나 韓國의 公害問題는 생각보다 빠르게 야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보다 產業化가 앞서고 있기에 보다 產業公害를 다루어온 工
業國들의 경우를 살펴 봄으로써 企業과 國民 또는 住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產業公害에 대한 비판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企業은 必然的으로 自然環境을 파괴한다는 論
理에서부터 出發한다. 이는 Club of Rome이 말하다시피 20年內에 產業公害에 의하여 6百萬의
人口가 死亡할 것이라는 主張에 의하여 그 결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와는 反대로 西獨政
府는 1971年에 市場經濟體制야말로 公害問題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體制라는 것을 그들의
公害防止政策에서 表明하고 있다.⁷⁾

다른 한편 企業은 兩面作戰을 치루어야 할 立場에 있다. 그 중 하나는 環境保全을 要求하는
國民들의 要求를 正當하다고 認定하고 그를 위하여 公害防止事業을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비로 不可能에 가까운 國民들의 要求를 방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公害가 적고 原料
를 節約하는 製品을 開發하여야 하며 企業內外에 公害防止를 위하여 施設을 하여야 한다. 그리
고 이와같은 施設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음 充分한 暫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公害防止의 限界를 國民에게 주지시키는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產業公害
는 國際的으로 認定하고 있는 水準을 輸送 옷들고 있는 實情이다. 만일 國際水準까지 끌어 올
린다면 많은 企業들이 公害防止를 위한 原價負擔을 감당할 수 없어 休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러면 失業의 고통은 社會가 받게 된다.

產業에 의한 環境汚染과 보다 낳은 生活의 質을 要求함이나 또는 Club of Rome의 公害에 대
한 警告도 20世紀의 重要한 社會的 課題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重要한 것은 國民과 企業과의
이 복잡한 관계를 단순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必要한 우리의 知的 力量을 다 動
員하여 그 解決策을 찾아보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 原子力發電所의 危險을 감당할 수 없는 정
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火力發電所에서 나오는 아황산 까스를 감수할 用意가 있거
나 협져히 줄어들 經濟成長으로부터 誘發될 수 있는 社會問題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
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經濟發展의 伸展을 참고 기다리거나 또는 포기할 用意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問題를 여기까지 확대하고 보면 이는 企業과 國民間의 關係
만이 아니라 國民相互關係의 利害關係이기도 한다. 公害의 直接的으로 害를 보는 사람과 그
렇지 않은 사람이나 公害를 誘發하는 企業에 從事하는 從業員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는, 公害
때문에 休業하는 企業으로부터의 失業者, 지금의 우리와 다음 世代間의 利害關係는 서로 다르다
이와같은 社會問題의 解決을 企業은 政治的으로 보다는 그들이 자주 익혀온 價格邏輯을

7) 獨逸말로는 公害防止가 아니라 環境保護라고 表現한다. 日本 사람들의 公害防止란 表現보다는 좀 여
유가 있어 보인다.

社會와 企業

通하여 解決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式으로 問題를 解決하려다 보면 汚染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飲食을 먹고 신선한 空氣를 呼吸할 수 있는 住宅街에 살 수 있는 사람은 高所得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는 社會道德의in 새로운 問題가 되며 國民의 보다 심한 거부반응에 부딪치게 되고 만다.

맑은 空氣와 깨끗한 물과 조용한 環境을 國民에게 提供한다는 것은 企業으로서는 財貨와 用役을 供給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環境이란 하나의 公的인 貢產으로써 願하던 願하지 않던 利用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前과는 달리 企業과 社會가 그들의 利害關係를 調節할 수 있는 새로운 形態의 協力이 要求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形態의 協力方法은 아직 開發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筆者는 自由競爭이 그 機能을 發輝하는 經濟體制와 復數主義의 社會秩序가 이 같은 어려운 問題를 서로 相反될 수 있는 利害關係를 協力의 으로 調整함으로써 어느 制度보다도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가 目前의 利害에 집착한 나머지 다음 世代의 利害를 무시할 위험이 다분히 存在함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d) 國家와 企業間에 긴장이 없으려면 企業과 國民間에 일력이 없어야 可能하다. 그런데 古典經濟學者들이 이미 이 問題를 解결했다고 보아온 所謂 夜警國家論의 立場을 國家가 脫皮한지는 옛날 이야기이다. 國家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이 그들의 經濟活動을 自由롭게 하여 주는 것 만으로는 不足하다. 國家는 그의 포괄적인 經濟政策에서 物價의 安定, 完全雇傭, 國際收支의 均衡, 經濟成長 그리고 所得分配를 그 社會가 要求하는 方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投資와 消費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國家는 地域開發, 產業構造, 技術開發, 貿易 그리고 經濟開發政策等에 경우에 따라서는 先導的인 役割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다가 보면 自然히 政治와 經濟 또는 國家와 企業은 不可分의 關係에 서게 된다.⁸⁾

한편 產業化가 進行되면 필수록 生產手段의 私有的 集中化가 이루어져 企業의 經濟的 힘이莫强하여 진다. 또한 이러한 경우 우리는 자주 自由競爭이란 市場經濟體制의 要素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國家는 또한 獨占禁止法이라던가 기타의 手段으로 市場機能을 活性화하는 꾸준한 努力を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결코 經濟的 힘이 私企業으로부터 國家權力으로 移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대하여 가는 私企業에 대한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 보다 높은 次元에서 企業과 國家의 相互作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전 까지만 하여도 大企業에 의한 中小企業의 合併을 매스콤에서 크게 보도하고 비난한 적이 있다. 이제 國民의 우려는 이렇게 함으로써 自由競爭力이

8) 70년代 高度經濟成長期間동안 政策의in 輸出金融이 大企業들의 不動產 投機에 惡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企業과 政府에 대한 國民의 不信風調가高潮한 바도 우리는 간파할 수 없다.

產業研究

상실되여價格에 의한市場에 카니즘이 상실될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企業은 앞에 말한社會的責任外에도 그들이經營政策的理由에서 이루어지는合併이自由競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國民이 납득할 수 있겠끔 하여야 한다. 經濟的發展 과정에서私企業이國家經濟政策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國家도私企業의經營分野에 간섭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제거하고社會가 이같은必要性을 이해하게 하려면兩者가變化하는經濟環境에 보다 유연성있게 적응하고前보다 많은議會民主主義的統制를 받아야 한다.

(e) 國家와企業과의利害關係는企業이多國籍企業일 때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經濟의利害關係가外國企業과그企業이존재하는國家와상반될 때 자주殖民地的쓰라린歷史를가진後進國에서多國籍企業의活動을새로운殖民政策이아니냐는의구심을가진다. 이와같은의구심은國家와企業이아주밀착한所謂“日本株式會社”的경우 더욱짙어진다.

그러나우리는戰後西獨의經濟復興이外國資本에의하여이루어졌고우리나라의70年代의經濟復興역시外國資本에힘입은바크다는事實을부인할수없는노릇이다.

그러나우리는多國籍企業이後進國에서행하는資金의格差와作業條件의差異와製品의差別價格들이後進國의工業化를위하여서이냐그렇지않으면後進國을착취하기위한手段에서이냐를예이주시하여야할것이다.自然資源이풍부한後進國에서營利를目的으로하는私企業에의하여한정된自然資源이무자비하게수탈당하고그결과는부자나라인工業國의富만을더증진시키는결과가되지않겠느냐? 또는自然資源이없는우리나라가外國의資源에의존할수밖에없는데果然우리는資源調達에있어서外國의資源을얼마나保護的으로채취하고있느냐하는것이다. Meadows의研究에의하면natural資源의이와같은착취는資源枯渴을유발할것이며그렇게되면後進國뿐아니라先進國도資源難에의한Industrialization의終末을면치못할것이라고한다.⁹⁾

우리는產油國들의油價政策에의하여두차례의호된곤욕을치루었다. 그러는동안에地球上에얼마나많은原油가있는가를심각하게재검토할기회를가졌으며에너지節約이工業政策의第一의課題가된적도있다. 그리고대체에너지에대한研究가技術開發의重點이되어오고있음은부인할여지조차없다. 그러나많은技術開發이私企業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다고보면企業의技術環境에대한社會的責任또한큰것임을우리는알수있으며그들에의하여개발된새로운生產方法내지는대체에너지는國境을초월하여全世界가덕을볼것이다.

9) D. Meadows, Die Grenze des Wachstums, Stuttgart 1972, S 45ff.

IV. 結 論

지금까지 다섯가지 항목에 대하여 企業과 社會가 當面하고 있는 문제를 說明하여 보려고 努力하였다. 이로써 企業이 社會의 要求에 어떻게 應하여 왔는지를 말하였으며 市場經濟體制에서 社會의으로 부가된 經濟的 課業을 앞으로 어떻게 達成해야 하는지의 方向指示도 된 듯싶다. 또한 社會도 企業에 對하여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社會에 財貨와 用役을 供給하는 企業을 감정적으로나 이데오로기적으로 對立시키는 일을 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옛 말이 있다.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이룩된 우리의 經濟秩序를 성급한 나머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數主義社會에서 서로 相反되는 利害關係는 보다 높은 次元에서 調節할 수 있는 政治的 經濟的 意識水準만이 20世紀를 사는 지혜이다.

